



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칙

규정번호	5-0-14
제정일자	2011.01.20
개정일자	2014.01.01
개정번호	Ver.3 총페이지 2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,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우리대학 학칙 제 54조의 3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2. 1. 17>

제 2 장 조 직

제2조(위원) ① 위원회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② 각 단위별 위원중 교직원 위원, 학생대표, 동문대표는 해당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당연 해촉한다.

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의 결원에 따른 신규 위촉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3조(위원장 등)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간 호선으로 정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.

③ 위원장 궐위시 위원중 연장자가 대리한다.

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 3 장 위 원 회

제4조(임무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 단, 제2호의 경우는 심사·의결한다.

1.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
2.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기타 등록금 책정 및 예산·결산에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총장이 요청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. 단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총장이 소집한다.<개정 2012. 1. 17>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 회의결과는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

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한다.<개정 2012. 1. 17>

제 4 장 기 타

제6조(규칙 개정) 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결재를 받아 개정한다.

부 칙

- (1) **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11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- (2) **(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)** 최초 위촉되는 위원 임기는 제2조 제3항에 불구하고 2011년말까지로 한다.

부 칙

- (1) **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**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1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**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2) **(적용례)** 제4조의 개정사항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.